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 공제조합이 설립되어 공제사업 개시를 준비 중임. 조합이 공제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제에 가입한 개인에 대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42조제2항)

법 제42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 . ~ . .)

3) 행정규제 : 없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생 략) (신 설)	제4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1조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5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 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 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 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 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연 락 처	(044) 201 - 4158